우정인재개발원 공고 제2024 - 20호

2024년도 제2회 서울지방우정청 우정9급(집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4년도 제2회 서울지방우정청 우정9급(집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5월 9일

우정인재개발원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근무예정기관	구분	선발예정 인원(명)	담당 업무
우정서기보	서울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21국)	일반	85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
		장애	4	
		합계	**89**	

□ 선발단위별 구분 모집표

구분	선발단위	선발예정 인원(명)	구분	선발단위	선발예정 인원(명)
일반	서울중앙우체국	3	일반	서울양천우체국	1
	광화문우체국	1		서울강서우체국	10
	서대문우체국	1		서울동작우체국	3
	동대문우체국	4		서울서초우체국	6
	서울광진우체국	9		서울노원우체국	7
	서울마포우체국	3		서울중랑우체국	1
	서울관악우체국	3		서울도봉우체국	2
	서울은평우체국	1		서울구로우체국	7
	서울영등포우체국	1	장애	서울광진우체국	1
	서울강남우체국	6		서울관악우체국	1
	서울성북우체국	2		서울강서우체국	1
	서울강동우체국	7		서울구로우체국	1
	서울송파우체국	7			
합계	21국 89명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합격자는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4년 이내 우정사업본부의 타 기관(총괄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제30조, 31조의2

○ 통합인사지침,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4. 6. 15.)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2023.6.29.))에 따라 2024.6.1.부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정부입법 개정 추진 중인바, 동법 개정시 그에 따라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 제33조제6호의3 및 제69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 병　　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한 자

○ 국　　적: 대한민국(복수국적자인 경우 임용 전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가능)

○ 학　　력: 제한 없음

○ 지역제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나.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 원서접수 마감일('24. 5. 21.)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일반 구분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 가능하나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다. 응시 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4. 6. 15.) 기준

○ 아래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②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라.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24. 5. 21.) 기준

○ **공통사항: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은 적극적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 취득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은 응시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의 경력을 인정**

- (유의사항) 원서접수 시 우대요건의 해당 내용 등록 후 관련 서류 반드시 제출　※ 원서접수 시 등록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우대요건으로 인정 불가

○ 세부사항

구 분	세부내역
관련분야 경력	ㅇ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 자격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한 이후의 경력을 인정** **※ 총 경력 1개월 이상에 대해 배점**
無음주운전 경력	ㅇ 운전경력증명서 상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 **※ 음주운전 경력(전체경력)을 확인(감점식)**
자격증	ㅇ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3급 이상 **※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

- (관련분야 정의)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 단, <u>우체국소포원 · 특수지 집배원 경력 및 舊재택위탁배달원의 '20년 이전 경력은 우정직(집배) 업무와 유사한 경력으로 50%만 적용된 환산경력으로 인정</u>

* 근거: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 소포업무 인정기준

① 소형의 ② 다양한 물품을 ③ 발송인(수탁자)과 택배업자가 일정한 계약(접수)을 통해 ④ 운송 등을 위해 포장을 하고 ⑤ 부착된 운송장(기표지)에 기재된 장소에서 ⑥ 다수의 수취인(수하인)에게 인도하는 행위

※ 소포업무가 아닌 특정물품의 배송업무, 퀵서비스, 대형마트 주문 · 배송 또는 내근직종의 근무 경력 불인정

마. 가산요건(적극적 서류전형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급 이상,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적극적 서류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

○ 원서접수 시 해당 항목 등록 후 반드시 관련 서류 제출

※ 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까지 입력해야 함

※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가산점 인정불가(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 제출 불요)

< 적극적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세부내용 >

◇ 기 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증명서 제출

◇ 신청방법: 원서접수 시, 해당 항목 등록 후 관련 서류 제출

※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가산점 인정 불가(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 제출 불요)

◇ **가산요건**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

- 등급별 가산점 부여: 고급(1, 2급) 5점, 중급(3, 4급) 4점, 초급(5, 6급) 3점

2.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5% 또는 3%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참고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선발단위에만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1577-0606)에 확인

②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참고사항>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선발단위에만 가산점을 적용함)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5)에 확인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적극적 서류전형 평가항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경력, 無음주운전 경력, 자격증)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 초과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법: 개별면접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따른 4가지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1. 소통 · 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 · 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 · 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 · 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공고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 5. 9.(목)	'24. 5. 17.(금) 09:00 ~ 5. 21.(화) 18:00 ※ 접수 취소 5. 24.(금) 18:00까지	'24. 6. 11.(화)	'24. 6. 15.(토)	'24. 6. 25.(화)

○ 응시표는 '24. 6. 3.(월) 09:00부터 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에서 출력 가능하며, 면접시험 당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 통합채용포털→ 마이페이지→ 응시현황→ 원서접수내역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통합채용포털에 게시 예정이며,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및 유의사항

가. 접수기간 및 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2024. 5. 17.(금) 09:00~5. 21.(화) 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접수방법: 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에 접속하여 접수

○ 응시수수료: 5,000원

<참고사항>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 內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됩니다.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접수한 날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처리비용을 제외한 응시수수료는 추후 반환됩니다.

※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는 원서접수 및 취소기한까지 '통합채용포털→ 마이페이지→ 응시현황→ 제출서류 메뉴에서 제출**

○ 응시 자격 취득예정자 원서접수 시 유의 사항

▶ **원서 접수 시, 응시 자격 중 하나의 자격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운전면허증(사본)과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시험(면접)일에 미충족 자격 취득증명 서류 제출(미제출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자격 취득예정자의 원서접수방법은 [붙임 2] 전자증명서 발급·제출방법 및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참조

나. 유의사항

○ 다른 선발단위에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시** 응시분야의 **근무예정지와 구분모집을 명확히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內,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비용을 제외한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취소기간: 5.24.(금) 18:00까지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붙임 1] 참조

○ 증빙서류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번호	서류 목록	비고
필수서류 (필수 제출)	1	자기소개서	통합채용포털에서 직접 등록
	2	직무수행계획서	
	3	운전면허증(사본)	
	4	운전경력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5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개별서류 (해당자 한)	6	경력(재직)증명서	
	7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9	의사상자 등 대상자 증명서	
	10	국가유공자증	
	11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12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나. 유의사항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서류**[예) 주소 변동 이력·병역 확인 불가,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제출 등) **제출, 사진 촬영 등으로 제출하여 서류의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따른 불이익(서류전형 불합격, 우대조건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

○ 제출된 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경력증명서 관련 안내 사항

- 기관·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발행기관의 증명이 있어 객관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사항 》

1.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명시
2.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미기재 또는 모호할 경우, 발급부서 확인(서명) 또는 직무분야와 관련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3. 제출한 경력의 확인을 위해 필요 시 4대 보험 자격 득실 증명·확인 및 소득금액 증명(국세청발급)을 제출받는 절차가 있음
4.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5.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은 기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사실증명 → (1번)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2번)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8. 안내 및 참고사항

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또는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자격증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로서 **실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편물배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 일평균 700여통 이상(최번기 760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0kg(최고 30kg) 상당의 다량 소포를 이륜자동차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배달하기 위한 체력 필요

라.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나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화요일~토요일(5일) 근무, 월요일 휴무

마. 원서접수 시 기재 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차.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통합채용포털 콜센터 (☏ 1800-6634)
○ 기타 시험 관련 문의: 우정인재개발원 인재채용팀 (☏ 041-560-5335~6)

9.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담당예정업무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서울중앙우체국 등 21개 우체국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	우정9급(집배)	총 89명

주요업무	○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 – 우편 차량, 원동기장치 운전 – 관할지역 우편물 구분 · 수집 · 배달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자료 전산 등록 및 처리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관련 부대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무 역량)** 안전의식 실천능력, 성실한 업무처리능력, 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 고객(민원)응대능력
필요지식	○ 차량 및 원동기장치 운행 관련 지식 ○ 사고예방 및 교통법규 관련 지식 ○ 집배관련 시스템, PDA 장치 사용을 위한 정보화 관련 지식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관련 지식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① ~ ②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②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관련분야	우편물 배달 ·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우대요건	**관련분야 경력**	○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 자격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한 이후의 경력을 인정 ※ 총 경력 1개월 이상에 대해 배점
	無음주운전 경력	○ 운전경력증명서 상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 ※ 음주운전 경력(전체경력)을 확인(감점식)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3급 이상 ※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
가점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6급 이상 인증서 보유 시: 3~5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5~10점 부여 ○ 의사상자 등 대상자: 3~5점 부여	

붙임 1 제출서류 안내 * 모든 서류는 통합채용포털에 업로드 해야 함

제출서류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서류**(예, 주소 변동 이력 · 병역 확인 불가,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제출 등) **제출, 사진 촬영 등으로 제출하여 서류의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따른 불이익(서류전형 불합격, 우대조건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는** 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스캔하여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순번	서류목록	내 용
필수서류	1	자기소개서	ㅇ 통합채용포털에서 직접 작성 ㅇ 2,000자 이내로 작성
	2	직무수행계획서	
	3	운전면허증(사본)	
	4	운전경력증명서	ㅇ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하여 전자지갑을 통해 제출** ㅇ (유의사항) - **공고일 이후 발급** - 면허취득일 이후 운전경력 **전체현황**을 확인가능토록 발급 *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 및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발급 -「**운전면허경력**」**란에 면허취득일자가 반드시 표기**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5	주민등록초본	ㅇ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하여 전자지갑을 통해 제출** ㅇ (유의사항) - **공고일 이후 발급** - **주소 변동 이력이 나타나도록 발급** - 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 포함하여 발급**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해당자에 한함	6	경력(재직)증명서	ㅇ **(p11 반드시 확인)** 기관·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 사업장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해야 함 ㅇ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7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ㅇ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험에 한함
	9	의사상자 등 대상자증명서	
	10	국가유공자증	
	11	장애인 증명서	ㅇ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12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